

●국방부고시 제2026-15호

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·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5월 04일

국방부장관

국방·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

- 1. 사업의 명칭 : 화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
- 2. 사업의 개요 :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
- 3.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: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703-1 등 2필지, 5,312㎡
- 4. 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계획 승인일 ~ 2027년 12월 31일
- 5.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
 - 가. 명 칭 : 국방시설본부장
 -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-99(용산동 2가 2-15)
 - 다. 연 락 처 : 02-748-4246
- 6.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(細目)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실제 이용 상황	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	소유자		관계인	
								주소	성명	주소	성명
계		2필지		5,312	5,312						
1	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	703-1	전	4,529	4,529	잡	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 구역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**~**	방*옥	-	-
2	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	702	전	783	783	잡	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 구역	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6**	김*수	-	-

※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(☎ 02-748-4246)에게, 국방·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(☎ 02-748-564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